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4서식] <개정 2025. 2. 21.>

정수기 관리카드

점검일시 (년월일)	설치장소 적정성 (○, ×)	필터 교환시기	청소・소독시기 (증기소독, 약품소독 등)	점검자 (성명, 서명)

< 참고사항 >

1. 정수기 설치 금지장소
   -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,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또는 냉・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.
2. 정수기 관리방법
   -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합니다.
   - 고온・고압 증기소독방법,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,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.
   -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   -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」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   - 먹는물 투입구,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
3.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